

## 【 7 】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4. 10.

제출자 : 양주시장

###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의거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범위) 이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른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생활폐기물처리 시설설치사업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다른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출연금
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부담금
5. 기타수익금

제4조(세출)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로 한다.

②제3조제4호에 의한 부담금은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대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전용금지)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

제정이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

주요골자

- 가.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전용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양주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정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지방재정법 : 제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시·군별 특별회계설치조례 비교표 1부.

## 關 係 法 令 拔 草 書

### □ 地方財政法

제5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할 수 있다.

## □ 市·郡別 特別會計設置條例 比較表

양 주 시(안)	고 양 시	성 남 시
<p>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의거 양주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업의범위) 이 조례에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른자치단체와 공동으로설치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li> <li>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li> <li>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2. 국·도비 보조금</li> <li>3. 다른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출연금</li> <li>4.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의한 부담금</li> <li>5. 기타수익금</li> </ol> <p>제4조(세출)①특별회계의 세출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경비로 한다.</p> <p>②제3조제4호에 의한 부담금은 그지역에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사료화시설의 설치에 당해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p>	<p>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li> <li>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3조(세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담금</li> <li>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 <li>3. 이자수입등 기타수입금</li> </ol> <p>제4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제1호에 의한 부담금등으로 설치하는 당해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 경비에 사용하며, 당해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p>	<p>성남시쓰레기소각장건설특별회계설치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소각장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사업의범위)쓰레기 소각장 건설의 범위는 성남 및 분당쓰레기 소각장건설사업으로 한다.</p> <p>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한다.</p> <p>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을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 市·郡別 特別會計設置條例 比較表

양 주 시(안)	고 양 시	성 남 시
<p>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p> <p>제6조(준용) 이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p>	<p>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p> <p>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p> <p>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p> <p>제9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p>	<p>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중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제6조(회계간의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회계년도내에서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p> <p>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p> <p>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한다.</p>
부 칙	부 칙(1998. 1.19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9 조례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